

의안번호	2207117
의 퇴 인	박용갑 의원
회 답 일	2025. 2. 17.
추 계 번호	24B6427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43조(항행안전시설의 설치)	국토교통부장관은 공항에 항공등화, 항행안전무선시설(<u>조류 탐지 레이더, 열화상 카메라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조류 충돌 방지 시설을 포함한다</u>) 및 항공정보통신시설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항행안전시설(제6조에 따른 개발사업으로 설치하는 항행안전시설 외의 것을 말함. 이하 이 조부터 제46조까지에서 같음)을 설치하여야 함(제1항) ※ 국토교통부장관이 설치하는 항행안전시설에 조류탐지 레이더, 열화상 카메라 등 조류 충돌 방지 시설 포함	의무규정

II.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

1. 근거 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미첨부 근거 규정
1	안 제43조 (항행안전시설의 설치)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2. 상세 사유

- 항행안전시설에 조류탐지 레이더, 열화상 카메라 등 조류충돌 방지 시설 포함(안 제43조제1항)
- 현행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공항에 항공등화, 항행안전무선시설, 항공정보통신시설 등 항행안전시설¹⁾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항행안전무

1) 「공항시설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5. "항행안전시설"이란 유선통신, 무선통신, 인공위성, 불빛, 색채 또는 전파(電波)를 이용하여 항공기의 항행을 돕기 위한 시설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16. "항공등화"란 불빛, 색채 또는 형상(形象)을 이용하여 항공기의 항행을 돕기 위한 항행안전시설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17. "항행안전무선시설"이란 전파를 이용하여 항공기의 항행을 돕기 위한 시설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18. "항공정보통신시설"이란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항공교통업무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교환하기 위한 시설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제5조(항행안전시설) 법 제2조제15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항공등화, 항행안전무선시설 및 항공정보통신시설을 말한다.

제6조(항공등화) 법 제2조제16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별표 3의 시설을 말한다.

제7조(항행안전무선시설) 법 제2조제17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거리측정시설(DME)
2. 계기착륙시설(ILS/MLS/TLS)
3. 다변측정감시시설(MLAT)
4. 레이더시설(ASR/ARSR/SSR/ARTS/ASDE/PAR)
5. 무지향표지시설(NDB)
6. 범용접속데이터통신시설(UAT)
7. 위성항법감시시설(GNSS Monitoring System)
8. 위성항법시설(GNSS/SBAS/GRAS/GBAS)
9. 자동종속감시시설(ADS, ADS-B, ADS-C)
10. 전방향표지시설(VOR)
11. 전술항행표지시설(TACAN)

제8조(항공정보통신시설) 법 제2조제18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항공고정통신시설
 - 가. 항공고정통신시스템(AFTN/MHS)
 - 나. 항공관제정보교환시스템(AIDC)
 - 다. 항공정보처리시스템(AMHS)
 - 라. 항공종합통신시스템(ATN)
2. 항공이동통신시설
 - 가. 관제사·조종사간데이터링크 통신시설(CPDLC)
 - 나. 단거리이동통신시설(VHF/UHF Radio)
 - 다. 단파데이터이동통신시설(HFDL)
 - 라. 단파이동통신시설(HF Radio)
 - 마. 모드 S 데이터통신시설
 - 바. 음성통신제어시설(VCCS, 항공직통전화시설 및 녹음시설을 포함한다)
 - 사. 초단파디지털이동통신시설(VDL, 항공기출발허가시설 및 디지털공항정보방송시설을 포함한다)
 - 아. 항공이동위성통신시설[AMS(R)S]
 - 자. 공항이동통신시설(AeroMACS)
3. 항공정보방송시설: 공항정보방송시설(ATIS)

선시설에 조류탐지 레이더, 열화상 카메라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조류충돌 방지 시설을 포함하도록 하는 것으로, 조류탐지 레이더 및 열화상 카메라 구입·설치 및 유지관리를 위한 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현재 국내 15개 공항 중 조류충돌 예방을 위한 열화상 카메라를 보유한 곳은 인천, 김포, 김해, 제주 등 4개 공항이고, 조류탐지 레이더를 보유한 곳은 없음

[표 1] 국내 공항 조류충돌 예방 장비 보유 현황

(단위: 개)

구 분	국내 공항 조류충돌 예방 장비					
	경보기	폭음 경보기	엽 총	열화상 카메라	음파 퇴치기	써치 라이트
인 천	—	—	36	4	2	—
김 포	—	20	24	1	—	—
김 해	—	8	23	1	—	—
제 주	—	10	24	1	1	—
대 구	—	—	8	—	—	—
울 산	—	18	4	—	—	—
청 주	—	—	8	—	—	—
양 양	—	18	4	—	—	—
무 안	11	11	4	—	—	1
광 주	—	—	8	—	—	1
여 수	—	12	4	—	—	—
사 천	—	—	2	—	—	—
포 경 주	—	9	2	—	—	—
군 산	—	2	—	—	—	—
원 주	—	—	2	—	—	—

자료: 국토교통부

- 개정안에 따라 국내 공항에 조류탐지 레이더 및 열화상 카메라를 설치할 경우의 추가재정소요를 추계하기 위해서는 조류탐지 레이더의 단가, 공항별 조류탐지 레이더 및 열화상 카메라 설치 필요 대수 및 장소 등 구체적인 계획이 필요하나, 개정안은 조류탐지 레이더 등 항행안전무선시설을 포함한 항행안전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 등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어, 현 시점에서는 구체적인 계획을 알 수 없어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기 곤란함

- 국토교통부는 조류탐지레이더 설치와 관련하여 전국 15개 공항에 총 844억원(국가 735억원, 인천공항공사 109억원)을 투입할 계획으로, 구체적인 예산 소요는 계획수립, 설계, 시공 과정에서 확정될 것으로 예상

Ⅲ. 부대의견

□ 없음

Ⅳ.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경제비용추계과	박인재	김신애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박인재	02-6788-4650	powerreset@nabo.go.kr